공 개

의안번호	제 92 호
의 결 연 월 일	2026. 4. 8 (제7차)

의결사항

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권 대 영
제출 연월일	2026. 4. 8

1. 의결주문

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)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**국내외 ETP** 간 **비대칭 규제 해소**를 통해 **투자자 편의 등을 강화**하기 위하여 **단일종목**을 **기초자산**으로 하는 **ETP 상품**을 **도입**하고자 함

* 금융위의 「국내-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추진」의 일환

3. 주요골자

□ **국내 우량주의 가격**에 연동하는 **ETP**의 **상장 근거** 마련(안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 신설)

□ **주권**의 **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** 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**단일종목 ETP**의 **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연계**(안 제116조제1항제2의2호, 제149조제2호다목 신설, 안 제153조제1항제12호 개정, 부칙 제2조)

□ **단일종목 ETF**도 **기존 ETF**와 같이 **상관계수가 일정수준 미달** 시 **상장폐지**(안 제116조제1항제1호 개정)

4. 참고사항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: <별지>

나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·구조문대비표 : <별첨>

<별 지>

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를 (6)으로 하고, 같은 목에 (5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5)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(이하 “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”라 한다)

제116조제1항제1호 중 “지수의”를 “가격 또는 지수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

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 중 “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”를 “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[증권종목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는 경우(이하 “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”이라 한다) 기초자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]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149조의7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

제153조제1항제12호 중 “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

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”를 “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”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과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

나.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입법예고(공고 제2026-53호)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」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 중 “주식워런트증권의”를 “주식워런트증권,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”로 한다.

②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6항 중 “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”를 “파생결합증권, 상장규정 제113조제2항제4호다목(5)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같은 규정 제149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도”로 한다.

<별 첨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13조(신규상장) ① (생략)	제113조(신규상장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심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	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
4. 자산구성방법: 상장지수펀드의 자산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. 이 경우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해야 한다.	4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	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	
다. 상장지수펀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방법으로 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납입자산 내역을 구성하거나 금전납입을 할 것. 이 경우 투자	다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. ----------	

대상, 가격·지수에 연동하는 방법, 지수 구성종목 이외의 자산 및 파생상품 자산 구성 비중을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해야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	
(1) ~ (4) (생 략)	(1) ~ (4)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(5) 주권의 가격에 연동하기 위하여 주권 및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등을 중요한 운용수단으로 하는 경우(이하 “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”라 한다)	단일종목 ETF의 상장 근거 마련
(5) (생 략)	(6) (현행 (5)와 같음)	조문 정비
5. ~ 8. (생 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
제116조(상장폐지) ① 거래소는 상장지수펀드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펀드증권을 상장폐지한다.	제116조(상장폐지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	

1. 상장지수펀드증권(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증권은 제외한다)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일간변동률과 상장지수펀드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일간변동률의 상관계수(이하 “상관계수”라 한다)가 0. 9 미만(다만, 액티브상장지수펀드의 경우에는 0.7 미만)이 되어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. 이 경우 상관계수의 산출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.	1. ---------- 가격 또는 지수의 ---------- ------. ----------	단일종목 ETF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
<신 설>	2의2.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	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폐지 시 단일종목 ETF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
3. ~ 10. (생 략)	3. ~ 10. (현행과 같음)	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
제149조의3(신규상장) ① (생 략)	제149조의3(신규상장) ① (현행과 같음)	
② 상장지수증권을 신규상장하려면 다음 각 호의	② ----------	

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 1. (생 략) 2. 기초자산: 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이 다음 가목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.·나. (생 략) 다. 상장지수증권과 연동하는 기초자산이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 또는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지수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할 것 (1) ~ (3) (생 략) 3. ~ 8. (생 략) ③ ~ ⑤ (생 략)	-----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상장지수증권이 기초자산의 가격[증권종목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는 경우(이하 “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”이라 한다) 기초자산은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] 또는 증권종목 이외의 자산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하는 경우 ---------- (1) ~ (3) (현행과 같음) 3. ~ 8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	단일종목 ETN의 상장 근거 마련
제149조의7(상장폐지) 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제149조의7(상장폐지) ---------- ----------	

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한다. 1. (생 략) 2. 기초자산 부적격 : 기초자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·나. (생 략) <신 설> 3. ~ 7. (생 략)	---------- ---------- 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다.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 3. ~ 7. (현행과 같음)	기초자산인 주권의 상장폐지 시 단일종목 ETN의 상장폐지 근거 마련
제153조(매매거래정지 및 해제) ① 거래소는 상장법인 또는 상장증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. 1. ~ 11의2. (생 략) 12. 상장지수펀드(외국상장지수펀드를 포함한다) 또는 상장지수증권이 목표로 하는 가격	제153조(매매거래정지 및 해제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 1. ~ 11의2. (현행과 같음) 12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 다음 각 목의 어느	조문 정비

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	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
<신 설>	가. 목표로 하는 가격 또는 지수의 산출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유동성공급자가 업무규정 제20조의4제1항제2호의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정상적인 호가제출이 어려운 경우	조문 정비
<신 설>	나.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및 단일종목상장지수증권의 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경우	기초자산인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 시 단일종목 ETF·ETN의 시장조치 근거 마련
13. ~ 16. (생 략)	13. ~ 16. (현행과 같음)	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
소관부서	자산운용과
연 락 처	02-2100-2661